

중재위원, 신청인, 언론사가 바라본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

01-3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바라본 언론조정중재절차

강진석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뢰인이 찾아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진행하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법원에서의 절차와는 구별되는 장점을 많이 알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우선 필자가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했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건은 인터넷신문사에서 신청인의 과거 범죄경력을 적시하고 현재에도 마치 범죄에 연루되어있는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에서 피신청인 기자는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하지 않고 신청인이 현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기사에 나온 범죄사실의 내용에 적시된 장소와 신청인 사업가가 거주하는 장소 등을 비교해 보아도 허위보도라는 점이 명확한 사건이었다. 해당 언론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사를 정정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양쪽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청인 측은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이 이미지가 중요한 사업인데 기사를 본 관계자들과의 거래가 중단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수천 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원하였고 피신청인 언론사 측은 회사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해 달라고 하여 수차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들의 조율을 거친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허위보도도 신속하게 중단되었고 손해배상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만약 법원을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신청인이 받게 될 손해배상액을 예측할 수 없고 또 손해배상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 측으로서는 만족한 만한 결과였다.

두 번째 사건은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분쟁과 관련된 기사 중에 오보가 있어 소속사 입장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였다. 신청인인 소속사는 연예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연예인이 소속사를 나가게 된 것이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기사에는 마치 소속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여 연예인이 소속사를 나가게 된 것처럼 기재가 되었다고 하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전속계약이 종료된 자료가 존재하였고 피신청인 언론사의 오보가 명확한 사안이었다. 해당 사건은 연예인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고 언론사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기사를 게재한 사건이었다. 허위보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언론중재 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를 받은 이후 곧바로 기사를 정정하거나 정정보도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이에 따라 기사가 정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 조정신청을 취하해 주었다. 그리고 이외에 몇 개의 언론사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중재위원들의 사실관계 확인과 양 당사자에 대한 합의 내용 조율절차를 거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조정 과정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대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철회를 하고 추후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문이 작성되었던 사안이다. 신청인인 소속사 입장에서는 소속사의 신용, 명예,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또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기사를 정정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던 사안이다.

이렇듯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의뢰인이 찾아오면 일단 사건을 파악한 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권한다. 가장 큰 이유는 신속한 해결이다. 이 부분은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과 뚜렷이 구별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 절차에 비해 사건 접수 및 사건처리 절차가 매우 신속하여 놀랐던 기억도 있다.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는 경우는 대부분 언론에서 명확한 오보를 하거나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후 조정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보가 언론사에 간 이후에 곧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신속한 구제이고 이를 통해서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우 유용한 절차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고로 법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언론을 통한 침해행위가 중단되는 기간까지는 빨라도 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상대방이 가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수 개월은 족히 걸린다.

위와 같이 언론기관의 보도가 오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인 측과 언론사 측이 정당한 보도 여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되지 못할 때 오히려 피해구제, 침해 행위 중단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토대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원의 판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사의 허위보도 내지 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밖에 없으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절차를 거치면서 느낀 점은 조금 더 신청인의 입장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절차가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절차와 구별되는 것은 신속한 권리구제절차라는 점 외에도 법원의 판결과 같은 일도양단(一刀兩斷)식의 결론이 아닌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인데 법원의 판결만을 기준으로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법원 절차와는 특별한 차별성이 없을 수 있다.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 허위보도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법원 절차에서는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언론사가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과실로 인해 허위보도를 한 경우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입게 되는 손해가 너무나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 절차에서의 판단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 허위보도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꾀하는 절차가 되었으면 한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의 경우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될때 한번 훼손된 이미지의 회복은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 매체와 각종 SNS를 통해 언론사의 보도가 많은 사람에게 급속도로 전파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언론사의 고의, 과실을 통해 이루어진 언론보도의 폐해는 너무나 크다고 할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최단기간내에 신속하게 중단시켜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이 언론중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피해자와 언론사 양 당사자가 대립된 주장을 하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의 입장 차이로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허위보도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어 언론보도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